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단53239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2)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은행	대위변제금(원)	연대보증인
1	2016. 5. 31.	180,000,000	200,000,000	D은행	165,118,407	.
2	2019. 5. 23.	297,000,000	330,000,000	기업은행	304,810,667	.
3	2019. 5. 23.	95,000,000	100,000,000	D은행	71,989,319	B

3) B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 제3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2020. 2. 29.경부터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20. 9. 2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가.의 2)항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 등

1) B은 2020. 4. 1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24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만 합계 310,514,3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71,989,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4. 14.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후로 걸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C 및 B이 가까운 장래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행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의 연대보증 아래 C와 사이에 컴퓨터 및 그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20. 2.경 피고의 미수금채권이 3억원에 달하고 있던 상황에서 향후 계속적 거래를 위해 B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2020. 2. 18.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부터 추가로 약 4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B으로부터 담보제공약속을 받았다는 2020. 2. 18. 기준 피고의 C 및 B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457,548,240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작성된 담보제공확약서(을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만 기재한 점, ② 오히려 위 채권최고액 4억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4. 14.자 피고의 C 및 B에 대한 미수금채권액 381,360,240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면 2020. 2. 18.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전제로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피고와 C 사이에 추가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확약서에는 채무자인 C나 B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가압류,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 및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제공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F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가 진행되어 2021. 12. 22.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87,212,363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B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7,212,363원¹⁾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며,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우관제

별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액수를 정확히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갑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대위변제금 71,989,319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이 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원고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만합계 310,514,3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권자들이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